

1.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2. 5. 4.] [법률 제18798호, 2022. 2. 3., 일부개정]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5조의5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3)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별표 2 비고1](#))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17조제1항·제6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5호, 2022. 5. 3., 일부개정]

【주요내용】

(1)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에 대한 금전적 부담 완화([제15조의4제3항](#))

현행 규정상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에서 도시공원 조성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차액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조성한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의무가 중첩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민간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2)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7항 신설](#)).

(3)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제42조의2 신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주요내용】

- (1)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함([제18조제11호, 별표 3의2 신설](#)).
- (2)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는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4 제15호 신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주요내용】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의원·치과의원 등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함([별표 1](#)).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함([별표 2 제3호나목 신설](#)).